

EU의 반덤핑 해설(II)

통상과

2. 피해(Injury)

1) 계산

Article3(4)는 1개국 이상으로 부터의 수입품이 동시에 덤플링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수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경우 누적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a) 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덤플링마진이 Article9(3)의 최소마진을 이상이며 각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의 양이 적지 않고 (not negligible)

(b) 수입영향의 누적평가가 수입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품과 EC산 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의 관점에서 적절한 경우

2) 최소 물량

Article5(7)은 덤플링과 피해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재소는 기

각되며, 조사대상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1% 이하인 경우는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입품의 합계가 EC 소비의 3% 이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시장점유율 방법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나 행정적으로 수입통계보다 산출하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점이 남는다. 시장점유율 자체는 통상 EC산업이 갖고 있으며 EC집행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제소가 기각될 염려는 없을 것이며 Article9(3)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Case가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방법이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WTO협정과 상이한 것인데 WTO에서는 특

정국의 덤플링수입량이 전체수입의 3% 이하일 경우 미소량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이때 3% 이하 국가들의 수입누계가 EC의 동종 수입의 7% 이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Case에서 EC방법은 아주 작은 시장점유율을 갖는 국가들이 수입의 3%를 점유할 수 있는 WTO방법보다는 좀더 개방적이고 민감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Case에서 WTO방법이 더 개방적인 경우 EC집행위는 WTO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3. 절차(Procedure)

1) 제소자격

Article5(4)는 조사개시에 대한 현지산업의 찬반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소는 이에대한 찬

반을 표시한 EC산업 총생산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EC생산자들이 지지할 경우 EC산업에 의한 제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제소를 지지한 EC생산자들이 EC산업이 생산한 동종제품 총생산의 25% 이하인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이는 협정문에 따라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격검증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Article5(9)는 제소장 접수후 45일 이내에 (기각은 1개월내) 조사를 개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자 자격이나 최소 시장점유율 등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적 압박이 예상된다.

2) 표본축출(Sampling)

Article17(1)은 제소자나 수출업자, 제품종류, 거래건수 등이 많을 경우 합리적으로 샘플링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rticle17(2)은 샘플 선택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위가 선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사개시 3주 이내에 샘플로 선택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자들과 협의 및 동의 하에 샘플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rticle17(2)방법은 관계자들이 답변서를 완료할 단계에서 이미 샘플링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모든 해외 생산자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하고 이후 실사단

계에서 샘플링을 검토하던 것에 비하면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Article17(3)은 관련당사자들에게 개별적 취급의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을 택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제한된 시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당초 표본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생산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가 너무 많아 조사기간내에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는 개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Article17(4)는 선택된 샘플이 조사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줄만큼 비협조의 정도가 클 경우 새로운 샘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협조의 정도가(새로이 선택된 샘플에서도) 존재하거나 새로이 샘플링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용가능정보(best available information)가 사용될 수 있다. Article17과 연결, Article9(6)은 샘플링을 했을 경우 Article17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조사는 받지 않았던 생산자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샘플링된 관련자들에 대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제로 마진이나 최소마진 그리고 이용가능정보에 의한 마진 등을 간과해야 한다. 집행위는 개별적 취급이 용인된 생산자들로 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개별관세나 정상가격을 적용

할 것이다. 절차에는 협조했으나 샘플되지 않았던 생산자들에 대한 관세는 조사협조 생산자들에게 부과된 가중평균 관세(덤핑마진이 아님)에 근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피해마진에 근거했을 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경우 협조하여 샘플링된 생산자는 모두 협조는 했으나 샘플링되지 못한 업체보다 더 낮은 관세에 적용될 것인 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최저가격 인상 약속(Undertaking)

UT제안은 수출자가 너무 많거나 기타 일반 정책적인 사유로 수락이 어려울 경우 不許할 수 있다.(Article8(3))

이 경우 관련 수출자는 UT 거부사유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코멘트 기회가 주어진다. 거부사유는 확정판정문에 명시된다. Article8(4)에 따라 UT제의자는 일반 공개가능 자료 제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EC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Price Undertaking이 표준화되고 있으며 핵심인 최저가격(minimum price)이 그 자체로 대외적인 관계로 동 규정의 중요성은 제한되어 보인다.

Article8(9), 8(10)은 UT가 철회 또는 위반될 경우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UT의 철회나 위반의 경우 원심 판정에 근거하여 확정판정이

있어야 하며, 관련 수출자(자진철 회의 경우는 제외)에게는 코멘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UT가 유반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UT를 결과했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UT의 위반이나 철회의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상컨대, 이용가능정보 사용의 경우 단지 UT위반 혐의 만이 있기 때문에 원심 판정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4) 신규참여자에 대한 재심 (Newcomer review)

EC판례와 협정문 등으로부터 발전되어온 것으로 신규참여자에 대한 재심 가능성은 Article11(4)에 규정되었다.

신규참여자의 조건은 이전 판행과 비교하여 조금 엄격해졌다. 신규참여자는 조사기간 이후 실제로 EC에 수출했거나 또는 상당량 취소 불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한편 EC규정은 재심진행 중에는 반덤핑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협정문의 중요한 개선점을 취했다. 재심개시관련 집행위 규정은 관세를 부과하고 또한 재심 결과 덤프판정을 받을 경우 신규참여자 재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덤프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규참여자의 수입을 등록하도록 했던 규정을 정정함으로써 신규참여자에 발효중인 관세를 철회할

것이다.

Article11(4)(c)는 놀랍게도 Article9(6)규정하에 관세가 부과된 경우 Article11(4)규정을 적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샘플링의 경우 신규참여자는 신규참여자 재심권한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WTO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신규참여자 재심개시를 거부할 경우 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5) 환불(Refunds)

Article11(8)은 관세가 지불된 것에 기초하여 덤프마진이 철폐되었거나 발효중인 관세이하의 수준으로 인하된 것을 입증할 경우 수입자는 징수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절차에는 3가지 장치가 있는데 두개는 UR협정의 결과이며 나머지 하나는 과거 EC환급절차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첫째, Article11(8)(a)에 환급요청은 확정관세 결정일 또는 잠정관세결정 판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이전 규정은 3개월)

이로써 수입자는 환급신청에 시 간적여유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보다 많은 수입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Article11(8)은 수입자가 환급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최장 18개월)이내에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결정된 환급금은 결

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회원국들이 지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부분적으로 협정문 Article11(10)에 따라 수출가격이 구성되는 경우 집행위는 수출가격을 지불된 반덤핑 관세량에 대한 공제없이 계산해야 하며 이 때 해당관세가 EC내 재판매 가격과 추후 판매가격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주목할 것은 Article11(10)은 Article11전체에 따라 수행된 조사와 관련된다.

Article11이 환급과 재심 모두를 취급하고 있는 바 같은 논리가 재심에도 적용될 것이다.

★ 협정문 Article9.3.3.

“Article2의 셋째항에 따른 수출가격 구성시의 환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기관은 정상가격의 변동, 수입과 재판매간의 비용변동 그리고 후속판매비에 반영되는 재판매 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입증될 경우 지불된 반덤핑 관세액에 대한 공제없이 수출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WTO규정에는 두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WTO규정이 상환(reimbursement)에 대해 언급하는 바 환급(refund)case에만 적용(재심이 아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 정상가격 변동

▶ 수입과 재판매간 발생한 비

용변동

- ▶ 후속판매가격에 반영되는 재판매 가격에서의 변동 따라서 WTO규정과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 ▶ EC규정은 환급과 재심 모두에 적용
- ▶ EC규정은 단지 한가지 상황만 언급 : EC내 재판매가격(독립구매자)과 후속 판매가격(독립구매자에 의한 최종소비재에 관세가 반영되었다는 증거)
따라서 EC규정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memorandum)는 WTO협정문이 EC규정에 반영되었다고 했으나 실은 한정된 부분만이 반영되어 있다.

6) 반덤핑 관세 흡수

(Anti-absorption)

협정문이나 GATT Article VI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1988년 EC는 EC관계기관이 수출자가 반덤핑관세를 흡수할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 규정 Article13(11)은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던 바 현재 개정되었다.

- ▶ 반흡수관세 부과이전 덤프 마진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 ▶ 정상가격에서의 변화가 수출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 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 반덤핑 관세는 수출가격이

구성되어질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경우 EC내 재판매나 후속 판매가격에 관세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Article12(5)는 더 나아가 조사가 정상가격의 재검토를 포함할 때 Article14(5)에 따라 수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등록절차(The registration procedure)

등록절차는 EC반덤핑법의 신규 항목이나 Article14(5)는 집행위가 반덤핑 자문위와 협의하에 세관에게 수입을 등록하여 이후 수입에 대한 특정조치를 등록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C산업은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서 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등록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등록절차에 따라 EC는 다음의 5가지 상황하에서 관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1) 상황—과도덤핑(massive)

① 과거 상당기간 동인 덤프과 ②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유발한 수입수준 외에 추가적인 상당한 덤프

【기간】 잠정관세 적용전 90일 이내(조사개시일 이전은 해당안됨)

(2) 상황—Undertaking위배나 철회

【기간】 잠정조치 적용전 90일 이내(철회나 위반일 이전은 해당

안됨)

(3) 상황—신규참여자 재심

【기간】 재심 개시일까지(어떤 경우라도 9개월 이내)

(4) 상황—정상가격 재검토를 포함한 반덤핑관세 흡수

【기간】 명확치는 않으나 조사 재개일까지(9개월 이내)

(5) 상황—우회 (Circumvention)

【기간】 등록일이나 담보가 요청된 일로 부터(9개월 이내)

그러나 협정문에는 우회와 관세흡수 규정이 없으나 EC는 UR이행법안에 동 조항을 일방적으로 삽입하였다. EC우회방지 규정이 일부 인용한 둔켈 초안이 우회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국 규정(둔켈초안 Article12)은 소급을 고려하지는 않았다.(제3국 우회(둔켈초안 Article10.5)와 환전(country hopping : Article10.4)의 경우는 잠정조치 적용전 150일 이내의 소급을 계획했었다.)

따라서 우회나 덤프관세 흡수와 관련 소급규정은 UR협정문과의 부합여부와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8) 반덤핑 조치의 유예(suspension)

Article14(4)는 EC의 이익에 관계가 있을시 집행위 결정에 의해 보호조치를 9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예조치는 집행위 제안에 대해 이사회의 단순 가결 판정으로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유예조치는 유예로 인한 피해유발 우려가 없고 EC산업의 코멘트 기회가 주어져 이를 고려한 후 가능하다.

이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반덤핑 조치 필요성의 정규재심의 대안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동종 제품 규제에 적용된 모든 국가 및 제품에 대해 무차별 원칙으로 적용되는 한 환영할 만한 규정이다.

9) 실사보고서

(Verification reports)

신규규정은(대외비 또는 공개 가능) 실사보고서를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될 있도록 제안한 협정은 Article6.7을 취하지 않았다. 그 동안 EC관행은 내부서류라는 이유로 실사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 왔다. 실사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EC집행위가 실사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실사절차 및 이용가능 정보(BIA)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규규정은 현장실사 및 BIA사용절차에 관한 협정문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4. 우회방지 (Anti – circumvention)

'95.9 EC집행위는 신규 반덤핑 규정(No.3283/94) Article13(2)에 의거 3.5 microdisks에 대한 우회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국가는 캐나다, 말레이지아, 마카오, 인도네시아, 태국, 인디아, 싱가폴, 필리핀, 홍콩 등이며 이번 조사는 제3국 우회절차이다.

WTO협정문에는 동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절차는 중요한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다. 사실 EC는 WTO에서의 협상력을 잊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Microdisk'가 우회방지 규정을 사용하는 첫 case가 되는데 우회방지조치 뿐만아니라 WTO에서 우회방지 규정에 관한 추가협상에 관한 선례가 될 것인 바 매우 중요하다.

1) 우회방지 규정

가. 실체적 조건(Substantive requirements)

우회의 정의와 관련 Article13은 (1)항의 일반규정과 (2)항의 조립공정을 다루는 특별규정을 갖고 있다. Article13(1)은 관행이나 공정, 작업 등에 관한 것이며 13(2)는 조립공정만을 다루고 있다. 13(1)은 환적, 재포장 등 단순 우회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rticle13(1)

"반덤핑관세는 구제조치의 우회가 발생할시 제3국을 경유한 수입에 적용할 수 있다. 우회란 관세부과 이익에 경제적 타당성이거나 타당한 원인이 불충분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으로 부터 야기되어 제3국과 EC간 무역 패턴에서

의 변화가 있고 동종제품의 가격이나 물량의 의미에서 관세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과거 동종제품에 대해 설정된 정상가격과 관련 덤핑의 증거가 있을시 우회로 간주된다."

Article13(1)은 따라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기존의 덤핑관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제3국 '원산'이라는 용어는 사용치 않고 있는데 이는 반덤핑 우회제품이 반드시 제3국 원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제3국 원산제품에 적용하는 정상적 반덤핑 관세와는 다르게 우회방지 관세는 제3국으로부터 수출되어지는 모든 제품에 적용될 것이다. 기존반덤핑 관세는 동종제품(완제품)뿐만 아니라 해당부품도 적용될 수 있다.

【우회요건】

▶ 조건1. 무역패턴의 변화

다른 국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무역형태 변화를 결정하는 시기가 명시돼지 않은 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도 가능할 것이다.)

▶ 조건2. 경제적 타당성이나 명분 부족

EC기관은 제3국에서 수행된 작업이나 공정의 본질과 동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기업은 따라서 덤핑관세부과 이외에 제3국에서 수행하는 경영이 타당한 사유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회

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조건에 대한 EC기관의 해석의 정도와 이에 대응,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입증(Burden of Proof)

입증과 관련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브라더’(日本)판정을 참조할 수 있다. 동. Case에서 ECJ는 구 원산지 규정(No802/68) Article6의 해석에 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Article 6

“EC”가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규정을 우회할 목적인 공정이나 작업은 이것이 수행되어지는 국가에게 원산지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Article 6의 해석과 관련 ECJ는 “부품이 생산되는 국가로부터 타국가로 조립을 이전하는 것은 그 移轉이 관련규정(조치)의 발효와 동시에 발생함이 없이는 그 자체로서 移轉의 유일한 목적이 규정적용을 우회키 위한 것이라는 가정을 합리화 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련 생산자는 조치우회 이외의 해당조립공정 수행의 자유를 입증해야 한다.”

Article6은 설정된 사실이 ‘유일한 목적이 조치의 우회’라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원산지 규정 Article6의 검증방법은 단순히 자유나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성만

을 요구하고 있는 Article13(1)의 방법보다 더 엄격하다.

‘Brother’ case에서 ECJ는 Article6의 해석과 관련, 조립라인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관련 업체는 실질적으로 입증의 부담을 지게 된다.

비록 Article13(1)의 의미가 EC조사기관에게 불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명분을 설정토록 요구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3국의 기업에게 입증의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결국 조사대상기업이 조립라인 이전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나 명분이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할 것 같다.

경제적 타당성이나 명분의 불충분성

우회에 대한 명분이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공하는 기타의 요소들의 있을 경우 우회가 아니라는 것은 EC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타의 요소들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rticle13(1)이 ‘제3국 조립공정의 유일한 목적이 우회’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명분이나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만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타의 요소들이 제3국으로의 공정을 불가피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반덤핑 우회가 아닌 명분과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조건3. 관세효과의 침해

셋째 조건은 동종제품의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관세 처방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우선 EC조사기관은 제3국산 수입품의 가격수준을 검토하여 이것들이 반덤핑관세에 부과된 제품의 가격수준보다 낮은지의 여부를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EC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상당한지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수출자들은 관세 부과 이후 물량감소 및 덤프관세로 조정된 그들의 가격수준이 덤프조치에 해당된 국가들의 가격수준과 비교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조건4. 덤프의 증거

넷째 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에 대해 과거 설정된 정상가격과 관련 덤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설정된’ 정상가격이라는 것은 우회되고 있다고 제소된 생산자의 수출가격과 예의 생산자의 정상가격과 비교함에 의한 실제 덤프의 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EC기관은 덤프관세 부과로 결정났던 과거의 반덤핑절차에서 계산된 정상가격을 단순히 비교할 것이다. 분명히, Article13(1)에서 EC가 WTO 반덤핑협정문에 따른 문제의 생산자에 대한 덤프 판정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WTO에 위배되는 것을 간주된다.

Article13(2)조립공정

Article13(1)의 일반규정에 더해 Article13(2)는 우회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조립공정에 관한 특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Article13(2)

다음의 경우 EC나 제3국에 있는 조립공정은 우회로 간주된다.

① 조립공정이 덤핑조사 개시 직전이나 직후에 개시 또는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관련부품이 조사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② 조립된 제품이 부품 총가치의 60% 이상이 규제대상국산일 경우 그러나 조립공정에 사용된 부품에 부가된 가치가 생산비의 25% 이상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관세의 쳐방효과가 조립된 동종제품의 가격이나 수량 측면에서 삽감되며 또한 동종이나 유사 제품에 과거 설정된 정상가격과 관련 덤핑의 증거가 있을 경우

Article13(2)는 EC역내 및 제3국 조립공정을 모두 포함한다.

‘①’의 조건과 관련, 과거 덤핑 규정 Article13(10)에 반해 조립 공정을 수행하는 생산자가 덤핑조치대상 생산자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②’항은 ‘부품의 가치’ 및 ‘부가 가치’검증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품가치 테스트

이는 구법 Article 13(10)과 같다. EC는 이를 위해 부품목록

과 조사기간 동안의 구매가격을 운송비, 통관비, 일반관세 등을 포함한 공장 입고가격을 기준으로 요청하게 된다. 또한 EC는 원산지 증명서와 원가명세 등 각 부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다.

하위 조립품(Subassemblies)에 대해서 EC는 특별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다. 하위부품(Sub-parts)으로 해체되지 않고는 분리될 수 없는 하위조립품은 단일부품으로 취급될 것 같으며, 따라서 여러 곳에서 원산하는 하위부품으로 구성되었을 지라도 단일 원산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하위부품으로의 해체없이도 더 이상 분리될 수 있는 하위조립품에 대해 EC는 전별 접근법(case-by-case)을 채택할 수 있으며, 때때로 하위부품 수준에서 부품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여러국가가 개입될 절차에서의 특별한 문제는 누적개념이다. 예를들어 태국의 디스크(micro-cisk) 생산자가 반덤핑 조치 대상인 일본 및 한국산 부품을 각각 35%, 30%를 사용하고 나머지 25%를 조치대상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조립할 경우 60% 한도를 초과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일본과 한국산 부품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이다($=65\%$).

Article 13(2)는 (조치대상국으로부터의) ‘관련부품’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모호하다. 따라서 Article 13(2)는 관세가 1개국에만 적용될 경

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동 조항이 규제조치 대상국가(The country : 단수 취급)를 언급하기 때문에 누적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우회의 제제는 반덤핑 관세의 확대인 바, 실질적인 문제 가 역시 발생한다.

상기 예에서 일본과 한국산 부품이 각각 35%와 30%가 되는 경우 어느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법 Article 13(10) 절차에서는 결정된 모든 case가 EC내 조립공정에 의한 일본의 우회의 경우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어쨌든, EC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누적개념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3국 조립업자들은 단일 국가로부터의 부품이 6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반덤핑조치 대상국가들로부터 여러 부품을 간단히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EC가 누적할 경우 아마 관세수준은 해당국들의 가중 평균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 테스트

25%의 부가가치 기준의 정확한 해석은 아직 문제의 여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생산비(MC)의 의미가 SGA 및 이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재료비(Parts value), 직·간접 노무비, 그리고 생산간접비(overhead) 이외의 생산비가 재료비를

포함한 전체생산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해석(좀더 개방적 인)은, 그러한 생산비에 더해 현지 원산한 부품도 역시 25%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rticle13(1)과 13(2)는 상호 배타적인가?

두 조항의 적용은 상호 배타적이 될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Article 13(2)(ii)에 따라 25% 이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한 경우 우회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case에서, 비록 집행위가 조립공정에 Article13(1)을 적용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지라도 상황은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조립공정에서 25% 이하의 부가가치가 실현되었으나 조치대상 국가산 부품이 60% 이하일 경우 Article 13(2)하의 우회판정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Article 13(1)에 따라서는 우회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Article13(1)이 규제대상국산 부품 사용을 조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생산자가 반덤핑조치 이후 태국에 공장을 설립했고, 이 공장에서 조립공정시 반덤핑부과 대상국산 부품을 60% 이하로 사용했으며 역시 25%의 부가가치를 달성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Article 13(1)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해도 동 생산자는 반우회 규정에 여전히 저촉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문제는 동 생산자가 기존의 반덤핑 관세회피 이외의 태국에 신규 투자를 유발한 충분한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동 생산자가 태국이 한국에 비해 생산비가 20% 이상 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對 EC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여타 국가들에게도 수출하기 위한 공장설립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 생산자는 우회가 아니며, 무역형태의 변화와 태국 내 신규투자가 충분한 이유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생산비가 20% 이상 낮다)을 갖는다고 이의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생산자는 이러한 것이 태국내 공장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Microdisk의 對 EC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8.1%인 바 반덤핑조치 대상국이 아닌 국가로의 移轉은 8.1%의 비용적 잇점을 갖게 되나, 생산비는 20%가 낮기 때문에 비용인하(20%)가 덤픽관세 우회*8.1%)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동 생산자는 EC이외의 국가에게 수출할 제품도 상당히 생산하는 바, 비용절감외에 추가적 입증사안이 된다.

나. 절차

★ Article 13(3)

“Paragraph 1의 요소에 관한 충분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다. 반덤핑 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

쳐 개시되는 조사는 각국 세관의 지원으로 집행위가 9개월 이내에 종결한다.

조사결과 규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단순 가결로 수입등록일 이후로부터 연장한다.”

상기조항은 ‘집행위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로 세관 당국은 수입등록을 하게 되며, 이후 등록일 이후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최종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 관세를 절차개시일로부터 소급,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절차는 정상적 반덤핑 절차와 같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구법 Article 13(10)에서의 조사대상 기간은 정상적 반덤핑 절차에서의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Article 13(4)는 등록절차나 우회방지조치로부터의 열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Article 13(4)

“제품수입이 우회가 아니라는 세관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등록치 않아야 한다. 동 증명서는 이사회 결정이나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집행위에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이 수입자에게 발부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회방지 관세는 제품이 제3국 원산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특정 3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제품에 적용될 것이다. 분명치는 않으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회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절차에 협조한 수출

자들에 대해 특정수출자(exporter-specific) 우회방지 관세율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Article 13(4)의 열회 규정으로 우회판정을 받지 않은 수출자(신규수출자)들이 관세적 용에서 열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질적인 검증을 거친 수출자들에게 이를 위한 관세증명서가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해외생산자가 우회절차의 조사기간 동안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동 수출자는 반덤핑 관세를 우회했던 것으로 판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동 수출자가 등록기간 동안이나 그 이후 부품사용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요청에 의해 세관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13(4)는 그러나 세관증명서 발급 기관을 정확히 언급치는 않고 있다.

2) Article 13의 GATT 일치성

UR에서는 우회방지 규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다만 이후 반덤핑 관행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에 이 문제를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 UR 합의없이 과연 EC가 일방적으로 동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 이전 EC의 반덤핑법 Article 13(10)에 관한 GATT 패널판정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여기서 GATT 패널은 우회방지

조치가 다음의 GATT Article XX(d) 하에 합당한지를 조사했었다.

★ GATT 패널

“협정문은 체약국들이… d) 동 협정문의 조항에 일치되지 않는 법안이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채택이나 시행을 방해토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패널은, 안제품 수입에 대한 확정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우회방지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 EC는 ‘부합하기 위해’(secure compliance with)의 뜻이 법과 규정 그 자체의 시행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의 목적을 침해하는 행위하는 방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GATT Article XX(d)가 법이나 규정의 목적과 법과 규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Article XX(d)의 목적과 관련, 패널은 EC의 광의의 해석을 수용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판정했다.

★ GATT 패널

“일반합의문(General Agreement)에 부합하는 법의 목적이同法하의 의무의 시행으로 달성될 수 없을 때, 일반합의문에 불일치하는 추가적 의무 부과로 동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무부과는 Article XX(d) 하에

서 합리화될 수 있다. 패널의 판점에서 이는 Article XX(d)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Article VI, X II 또는 XIX 같은 일반합의문에서 각각의 열외는 정책적 목적의 합법성을 인정하나 동시에 동 목적의 획득을 위해 부과되어질 수 있는 의무와 같은 조건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열외의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은 목적들이 열외 조건내에서 달성될 수 없다는 판점에서, 이들 열외에 불일치하는 의무의 시행이 Article XX(d) 하에서 합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더 이상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은 GATT 패널 결정에서 분명한 것은 Article XX(d)는, Article VI(GATT 반덤핑법)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우회방지 조치 채택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회방지 조치는 피해와 덤플 그리고 둘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GATT의 조건을 충분히 따를 때에 비로서 채택되어질 수가 있다.

신규 반덤핑 규정 Article 13과 관련, 반덤핑 협정문 Article 2의 덤플마진 계산규정에 따르지 않고도 반덤핑 관세를 연장할 수 있다.

Article 13(1)과 13(2)는 단순히 과거 동종 또는 유사제품에 설정된 정상가격과 관련 덤플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설정

된 정상가격’에의 참조는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것으로 제소된 생산자에 대해 정상가격을 계산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반덤핑 협정문 Article 2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EC는 태국 생산자의 수출가격과 일본 국내 가격을 근거로 일본산 Microdisk 절차에서 과거 설정된 정상가격을 단순히 비교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산에 적용되는 반덤핑 판세가 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단순히 확대 적용될 경우 판세는, 태국 생산자의 태국 내 내수 가격이나 구성 정상가격과 비교할 때의 태국 생산자에 대한 덤픽마진을 초과할 것이다.

둘째로 특기할 것은, Article 13은 피해의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rticle 13이 반덤핑 판세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판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반덤핑 협정문 Article 3의 규정에 따른 피해의 판정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

따라서 Article 13의 우회방지 규정이 GATT Article VI와 GATT 반덤핑 협정문 Article 2 및 Article 3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Ball Bearings Judgement
EC의 1심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 : CFI)는 볼베어링 Case에서 반덤핑법에 관한 첫

판정을 내렸다.(’95.5.2)

동 재판소는 ’94.3월 이후 반덤핑케이스에 대한 판결권을 부여받았다. 동 Case는 30mm 이상의 일본산 볼베어링에 관한 반덤핑판세 부과규정(OJ NO L286/2 : ’92)에 관한 것이다.

이 판정은 그동안 서둘러 판정 하던 ECJ(유럽사법재판소)와는 달리 집행위 판정내용을 철저히 분석했던 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환영할 만한 것은 피해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다는 것이다.

과거 ECJ는 피해의 판정은 상당부분 EC기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간주했었다.

그러나 CFI는 이사회(이사회)의 판정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대부분 언전치 못하고 또한 부정확한 것으로 판정했다.

★ CFI

“분석결과 판정의 Para. 27, 29, 30, 31, 32, 35, 36, 37은 사실적, 법률적 실수로 무효화되거나 또는 불완전성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덤픽수입품이 EC벌베어링산업에 물리적 피해의 유발을 위협한다는 Para. 39의 이사회 결정은 그 자체로서 법적, 사실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셋째 특징은, 동재판소가 1979 GATT 반덤핑코드 표준에의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의지 및 검토이다. 이는 과거 ECJ가 전형적으로 EC규정이 GATT코드에 부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EC규정에 따

라 절차를 진행하던 관행에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업체인 ‘NTN’과 ‘Koyo Seiko’의 무피해 주장 이외에 CFI는 특별히 재심기간을 규정했다(재심기간은 41개월이 소요되었음).

★ CFI

“EC는 1976년 볼베어링 조사를 개시했다. 따라서 EC기관은 이 부문에 익숙해져 있는바 재심은 조속처리했어야 한다. 또한 특기할 것은, 30mm 이상 볼베어링 재심기간보다 훨씬 적게 소요하고 더 많은 제품군(볼베어링 및 tapered roller 베어링)을 포함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Regulation No 3669/84(’84.12.21)를 채택한 재심은 10개월이 소요되었다.”

CFI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것이며, 이 판정으로 향후 EC집행위의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CFI는 재심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판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무피해 판정으로 관련 규정이 무효화될 것으로 이미 결정났기 때문이다.

Time Limits

1994년 규제에는 다수의 시간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Article 24에 이러한 시간제한은 1995. 4. 1 이전 집행위가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제출할 안에 대한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정 이후에 적용될 것이다. 이 결정은 1995. 3. 30 이루어졌으며 1995. 9. 1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첫째, Article 5(9)는 재소후 45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토록 하고 있다. 제소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45일 이내에 EC산업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둘째, Article 6(9)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종결토록 하고 있으나 최장 15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셋째 Article 7(1)하에서, 조사

개시후 60일로 부터 9개월 이내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 단축을 위해 1995년중 50여명, 1996년에 30명의 집행의 조사관이 보완되어 총 150여 명으로 증원될 것이다.

반덤핑 담당 조직 또한 덤프조사전담과 피해조사 전담을 별도로 두었다. 따라서 1995. 9. 1이후

덤핑과 피해를 별도로 동시에 조사하게 되는 바 한편으로는 중복의 우려가 있는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네가티브 피해판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법률가들의 느낌에 덤프의 판정은 곧 피해의 판명을 유발하곤 했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투자개발 위원회 (Locate In Scotland)

- 스코틀랜드 투자 개발위원회의 구조

스코틀랜드 투자 개발위원회의는 스코틀랜드 내무성의 관할로서 스코틀랜드 산업부 장관이 회장을 맡고있는 감독위원회가총괄적인 책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감독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스코틀랜드 경제 개발 진흥공사의 총재 및 산업 확장 그룹의 차관 및 LIS의 감독이 있습니다.

- 유럽 현지 개발의 중요성

북미, 유럽, 극동으로부터의 투자기업이 스코틀랜드에 투자할 경우, 스코틀랜드는 새로운 노우-허우의 이해를 포함하여 지역 개발 및 혁신을 고양하며, 지역 공급자들의 연계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전문 인력 및 고용 확대를 창출합니다.

특히 EU출범으로 역외국의 역내 진출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현지 투자를 통한 EU 진출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스코틀랜드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며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 투자 개발위원회 마케팅 전략은 집약적으로 주요 국가와 주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주요 대상은 북미, 극동, 유럽, 영국이며 중점 분야로는 전자, 보건, 첨단기계 공학, 재정 서비스 산업 등입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로는 씬 마이크로시스템, JVC, NEC, 미쓰비시 전자, 다이렉트 라인, 뱅커 트러스트, 컴팩컴퓨터, 칼레도니안 페이퍼 등이 있습니다. 약 400여개의 전자 업체가 스코틀랜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투자 개발위원회는 또한 이미 스코틀랜드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가운데 확장을 원하는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협력미쓰비시 등은 스코틀랜드에 진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장해온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